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또한 국비 지원이 의무에서 재량으로 변경 됨(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보조하여야 한다→보조할 수 있다.)

나. BRT 운수종사자 자격 관련 조항 수정(안 제32조제2항제3호 개정)

운수종사자의 자격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29조 삭제, 제31조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동일하게 자구 수정(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계건설사업”을 “체계건설사업 실시”로, “보조하여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운영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정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3.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을 통한 환경 비용 절감 효과
4. 그 밖에 지원 금액의 적정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2 제2호라목 중 “법 제29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제7호의2·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출발 전에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4항	3	5	1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u> 1. 2. (생략) <u><신 설></u>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 ----- ----- <u>체계건설사업 실시----- 보조할 수 있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운영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정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2. 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분담률 제고 효과 3.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을 통한 환경 비용 절감 효과 4. 그 밖에 지원 금액의 적절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② 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3. <u>법 제29조제1항제3호</u>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수여 4. (생략) ③ (생략)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u> <u>조제1항제3호</u>-----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 - 5121